



Korean Tax Newsletter

6 July 2026

CONTENTS

세무동향

- 국세청,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 국세행정 대도약을 위한 업무 추진방향 발표
- 국세청, 청년 창업기업 세정 지원 실시

예규판례

○ 조세심판원

- 건축물 신축 이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한 과밀부담금 등 관련 비용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완전자회사를 다른 완전자회사가 무증자합병하는 사안에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정경제부

- K-IFRS 1109 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 행정안전부

- 차량 제조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 국세청

- 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손익귀속시기 등 세무처리 방법
-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
-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세무동향

국세청,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27.(월)까지 2026년 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7.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신고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 ⇒ 간이, 간이 ⇒ 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함에 유의

○ 세정지원

-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국세청, 국세행정 대도약을 위한 업무 추진방향 발표

국세청은 6.11.(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지난 1 년간 주요성과와 2 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6.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1 년차 주요 성과

- 세무조사 패러다임 개선: 현장 상주조사 축소 및 조사시기 선택제 도입, 반복 과세 항목 10 개 사전 공개
-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 실시: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국민 중심 세법해석 실시, 중동전쟁 피해기업 및 관세피해 수출기업 세정 지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 2 년차 업무 추진방향

-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 법령 및 전산 인프라 정비 등 추진
-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구현: AI 상담·검색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AI 전자신고, AI 세금 컨설턴트, AI 업무지원 등 국세행정 전반에 AI 를 도입

국세청, 청년 창업기업 세정 지원 실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6.1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
- 세무컨설팅 제공: 전국 17 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
- 세무정보 자료 제공: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QR 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 제공

○ 기타 세정지원 정책

-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시행
-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 실시
-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 지원
-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최소화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축물 신축 이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한 과밀부담금 등 관련 비용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심 2025 지 2536, 2026.4.16., 취소)

■ 쟁점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한 과밀부담금 및 관련 용역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AAA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1, CP2, CP3 블록 토지 82,724㎡(이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 16865 호로 개정된 것) 제 180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의 종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에 따른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2024.8.28. 이 건 토지 중 CP2 블록(20,812㎡, 이하 “쟁점토지”) 지상에 생활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성된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24.9.23. 건축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24.9.27. 이를 납부하였음

한편, 청구법인은 2024.9.20. 이 건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이하 “쟁점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건축과)은 이를 처리한 후, 2024.10.29. 청구법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2 조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한 과밀부담금 및 이에 따른 용역비 등의 부대비용은 「지방세법」 제 10 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2024.7.9. 대통령령 제 34683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18 조에 따른 사실상취득가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상기 비용(이하 “쟁점비용”)에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은 원칙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 개수 등과 같이 물리적·구조적 변형을 수반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신축 취득 이후 발생한 용도변경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며, 설령 그 비용 중 일부가 개수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조심 2019 지 2318, 2020.2.25.,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은 2024.8.28. 생활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취득이 완결되었고, 그 이후 별도의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2024.11.4.에 비로소 교부되었는데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은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행정행위를 통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용도변경 과정에서 증축·개수·대수선 등과 같은 취득을 수반하지 않고 단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된 점, 특히 쟁점비용 중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2 조에 따라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공공적 비용을 개발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부과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을 생활숙박시설로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취득 이후 건축물의 이용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 이후에 발생한 용도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완전자회사를 다른 완전자회사가 무증자합병하는 사안에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 서 3654, 2026.5.28., 취소)

■ 쟁점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00.11.1. D 주식회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주)B 는 2021.11.1. 청구법인의 또 다른 완전자회사인 (주)C 을 무증자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하였고, 쟁점합병 후 청구법인은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피합병법인인 (주)C 지분의 장부가액 000 원을 차감하고 동 금액을 합병법인인 (주)B 지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였음. 청구법인은 (주)B 와 (주)C 의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C 주식의 장부가액 000 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주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주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 19 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증자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받지 못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로 당해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가액에 가산할 법령상 근거는 없어 보이므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가액에 가산하여 증액하는 것은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2024.2.29. 대통령령 제 34266 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 제 5 항에서 쟁점신설규정을 신설한 것은 ‘무증자합병의 경우 신주 발행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 제 2 항 제 5 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증자합병 시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를 할 근거가 없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제 19 조 손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금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책적 목적에서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 서 8220, 2026.6.2., 결정)

■ 쟁점

- ① (주위적 청구) 그룹브랜드 광고선전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상표권임대업(과세사업)에 전속으로 귀속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예비적 청구) 적어도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만큼은 상표권임대업(과세사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은행업(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수사업으로 무형 재산권 임대업(과세사업, 이하 “상표권임대업”), 금융상품 판매대행업(과·면세 겸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〇〇〇 등의 문자 표장 및 도형 표장(이하 “쟁점상표”)을 보유하고 있고, 2016 년 이전까지 쟁점상표를 계열사들에게 사용토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대가는 받지 아니하면서 쟁점상표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부담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중부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하자,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과 종전심판결정 등의 내용에 따라 2016 년 9 월부터 계열사들과 ‘서비스 표 등에 관한 사용계약’(이하 “쟁점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쟁점상표에 대한 광고선전비(이하 “쟁점광고선전비”)를 지출한 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왔음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5. 쟁점광고선전비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 년 제 2 기~2020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그룹 전체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된 사업의 영업확대와 매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이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영위하게 된 상표권임대업에 전액 실지귀속되므로,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를 보유한 청구법인이 상표권임대업 외에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 등의 주요사업을 겸영하고 있어, 쟁점상표의 가치 증대가 상표권임대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의 매출 증대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 상표권임대업이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여 쟁점광고선전비가 상표권임대업에 전속하여 귀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상표권임대업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그룹 내부의 제한된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약·내부정책에 따라 상표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정형적으로 정해지는바, 쟁점상표에 관한 광고의 집행으로 인한 모든 효과가 상표권임대업 전체 매출과 직접적·개별적으로 대응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전반의 영업지표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쟁점상표의 식별력, 명성, 신뢰 등을 높여 브랜드 자산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므로,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대응되는 부분이 특정된다면 이를 상표권임대업에 실지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 기업집단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선전비 전체를 상표소유자의 공동매입세액으로 보게 되는 경우 해당 광고의 효익은 그룹 전체에 미치게 되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상표 소유자의 과·면세사업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비율은 달라지게 되어 조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종전심판결정 이후 청구법인은 계열사

들이 종전에 부담하던 쟁점상표에 대한 광고비까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계열사들은 쟁점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광고비와 수취하는 상표권사용료의 매입·매출의 직접적 대응성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심판결정 이전부터 계열사와 그룹 브랜드 광고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영업수익) 기준으로 분담하여 왔고, 종전심판결정 이후 상표권사용료 역시 외부 감정평가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 중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쟁점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열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영업수익)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의 합계 매출액(영업수익)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정경제부] K-IFRS 1109 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 2026.5.20.)

■ 질의

K-IFRS 1109 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손해보험회사인 내국법인이 종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에 대해 K-IFRS 제 1109 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61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2, 2026.5.29.)

■ 질의

(질의 1) 금전 저리 대여에 따른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미지급이자 계상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제 1 안) 미지급이자 계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 (제 2 안) 미지급이자 계상액은 포함됨

(질의 2) 적정이자율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자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 금전 무상대출 증여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 1 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 (제 2 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불가

■ 사실관계

- A 법인은 관계사들에게 적정이자율이나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고 수년간 미수이자를 계상하며 장기간 원리금을 미수취하였음
- (B 법인, 000 억원) 골프장 등 개발 등을 위해 대여기간이 15 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실제 이자회수 없이 미수이자만 계상
- (C 법인, 000 억원) NPL(부실)채권 인수 및 시행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을 대여 후 실제 이자회수 없이 미수이자만 계상
- 사주일가인 甲, 乙, 丙은 상기 법인에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이 30% 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5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질의 1 의 경우 제 1 안이 타당함. 질의 2 의 경우 제 2 안이 타당함. 다만, 질의 1 과 질의 2 의 회신은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전제로 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약정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함) 상 계약 체결일, 채권자·채무자의 정보, 대여금액, 대여기간 및 상환일,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상환 지연 시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를 회계장부에 적법하게 계상했는지, 계약 이행상황 등을 고려한 조세회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6.18.)

■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 18634 호로 개정된 것)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본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 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 1 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이하 "공제대상 자산")을 같은 항 제 2 호 가목 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목 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제외한 자산(이하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 년간 연 평균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산정하는 것임

또한, 쟁점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금액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중 초과금액이 발생한 자산 간에 그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차량 제조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73, 2026.4.6.)

■ 질의

차량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없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 문언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은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한 자에게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되, 그 단서에서는 본문에서 사실상 취득으로 넓힌 과세대상의 범위를 차량 등에 한하여 승계취득으로 제한하고 있음(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 구합 80497 판결 참조)

즉, 제조자 등이 직접 제조한 차량 등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제조자 등이 그 차량 등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7 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제조자 등이 차량 등을 원시취득 하였더라도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비자 또는 실수요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각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그에 따라 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한편, 「지방세법」 제 10 조의 5 제 1 항 제 3 호나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 제 3 항에서 제조자 등이 생산한 차량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표준이나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는 제조자 등이 제조한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임

다만, 본 회신은 현행 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은 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손익귀속시기 등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5-법규법인-0030, 2026.1.22.)

■ 질의

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프로필렌, 암모니아, 산소를 반응(이하 ‘암모산화 반응’)시켜 주력제품인 아크릴로니트릴 모노머(이하 ‘AN’)를 생산하고 있으며, 암모산화 반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생시켜 수율 등을 높이기 위해 촉매*를 투입하고 있음

* 몰리브덴(Molybdenum, 원소기호 Mo, 원자번호 42) 및 기타 성분으로 구성

- 촉매는 크게 Initial 촉매, Make-up 촉매, 폐촉매로 분류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구분	특징
Initial 촉매	- 제조장치를 최초로 설치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처음으로 생산하기 시작할 때 제조장치에 투입 -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하여 손금처리
Make-up 촉매	- 최초투입시점 이후 2~3 년마다 소모된 촉매를 보충·교체하고 최적의 수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장치에 추가투입
폐촉매	- 공정에서 사용되어 촉매 활성(활성도, 생산성)이 기준 이하로 저하되어 더 이상 정상 생산에 사용이 어려운 촉매 - 수율이 떨어진 촉매를 제조장치에서 꺼내어 보관하다가 필요에 따라 외부업체에 처분하여 대가 수취 - 경제성이 있는 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나 탄화수소 등 유해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통제 속에서 주무관청의 인가 후에 폐기 전문업체를 통하여 폐기처리 ⇒ ‘23 년 2 월부터 판매가능한 거래처를 파악하여 주무관청 인가 후에 매각하고 있음

회신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생산 시 암모산화 반응을 효율적으로 발생시켜 수율 등을 높이기 위해 3 년 미만의 기간마다 Make-up 촉매를 제조장치에 보충·교체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은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Make-up 촉매가 제조장치에 투입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수율이 떨어진 촉매(이하 ‘폐촉매’)를 제조장치에서 추출하는 경우 폐촉매가 최초로 제조장치에서 추출되는 시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사전-2026-법규법인-0055, 2026.4.7.)

■ 질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 조의 3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부여하면서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게 된 경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법인령§19(19 의 2)가목)

■ 사실관계

- 갑법인은 '00.7 월 설립된 콘텐츠 제작 및 배급, 라이선스 판매 및 완구 제품 제작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갑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벤처기업으로, 갑법인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21.*.*에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에 상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이후, 2025 년 중 일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법인-4159, 202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4159, 2026.1.6.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9 호의 2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국세청]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820, 2026.6.8.)

■ 질의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기계, 주형,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X년 aaaa 유한공사(중국 소재기업)와 합작하여 중국 소재 현지법인 bbbb 유한공사(이하 “합작회사”)를 설립*
* 합작회사의 경영기한 10년, 기한 만료시 협의하여 기한 연장 가능
- 현지법인의 지분구성은 aaaa 유한공사 70%, 신청법인 30%이며, 신청법인은 현금 출자 없이 자체 보유한 기술을 1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분 30%를 취득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
- 합작회사 기술사용 계약서 제 3 조 (실시권)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합작회사에 대해 일정 영역(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내에서 신청법인의 노하우와 특허권 등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영역 내에서 타사에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실시권을 사용하도록 합작회사에 허락함
- 합작회사 기술사용 계약서 제 15 조 (기간 및 종료)에 의거 합작회사의 경영기한은 10년으로 하고 기술사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합자경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함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34

jjkim@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